



진후씨엔 사방화 공사 설비 제조 유한책임회사 VS 진후씨엔 화공 기계 제조 유한공사 상업비밀침해 분쟁 사건

07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장수성 고급인민법원	사건번호	(2000)苏知终字第26号
판결 일자	2000년 5월 25일	판결 결과	상소 인용(권리자 패)
원심원고(피상소인)	진후씨엔 화공 기계 제조 유한공사		
원심피고(상소인)	진후씨엔 사방화 공사 설비 제조 유한 책임공사		
참조 법령	중화인민공화국 부정당경쟁법 제10조, 민사소송법 제153조		
영업비밀	건조기 생산 기술 비밀, 고객 정보		
키워드 (Keyword)	비밀보호 조치(保密措施), 상업비밀침해(侵权商业秘密), 비밀관리제도(保密管理制度)		

02 사건 개요

원심 원고 화공 기계 제조 유한공사(이하 ‘화지공사’라 함)는 1989년 KSB형 건조기를 개발하고 국가 선도적인 과학기술 성과로 인정받기도 하였다. 화지공사에서 건조기 생산 및 판매를 담당하던 직원 장춘화, 마오잉칭 등이 화지공사를 떠나서 원심 피고 사방화 공사 설비 제조 유한 책임공사(이하 ‘사방공사’라 함)를 설립하여 HG형 건조기를 생산하였다.

이에, 화지공사는 사방공사에 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화지공사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 이유는, 화지공사의 KSB형 건조기는 화지공사의 상업비밀에 해당하고, 사방공사의 주요 구성원은 원래 화지공사의 기술직원으로 화지공사의 기술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사방공사 생산 과정에 생산 허가증 등 규범화 된 생산가공 기계설비 및 측량설비가 없으므로, 사방공사의 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였다. 이에 사방공사가 상소한 것이다.

03 주요 쟁점

원심 원고(피상소인)	⇔	원심 피고(상소인)
화지공사가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		화지공사는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없었다.
화지공사가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였다.		화지공사가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사방공사의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한다.		사방공사의 영업비밀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

04 판결 요지

화지공사가 1심 심리 중 영업비밀 보호조치를 취하였음을 주장하며, <기업관리제도 보충>, <기업비밀엄수제도>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논의의 초안에 불과하고 실제 시행되지 못하였음이 밝혀졌다.

영업비밀의 구성요건의 하나는, 권리자가 공중에 알려지지 않은 기술 및 경영정보에 대해 비밀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비밀보호 조치가 결여된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는 영업비밀을 형성할 방법이 없고, 법률 보호를 받을 수도 없다.

본 사건에서 장춘화, 마오잉칭 등이 화지공사에서 일하던 기간 동안, 화지공사의 생산기술 및 고객명단에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으므로, 화지공사의 KSB 시리즈 건조기 생산 기술 및 고객 명단을 영업비밀을 구성하지 않는다. 사방공사의 상소를 인용하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화지공사의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05 Key Point

영업비밀이 부정당경쟁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권리자가 해당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는 한국의 영업비밀 보호 제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중국 영업비밀 판례들이 영업비밀의 요건의 하나인 ‘비밀 보호조치’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공사 내부에 영업비밀 보호 규정이 제정, 시행되고 있는지, 노동계약서 등에 ‘비밀 보호 조항’이 삽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경영 활동을 하거나, 근로 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사 내부에 반드시 비밀보호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며, 노동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비밀보호 의무 조항 및 영업비밀 등 지재권 보호 조항이 삽입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